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도	2024.6.20.(목) 조간	배포	2024.6.19.(수)
----	------------------	----	---------------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박재영	(02-3145-7590)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증권선물본부	담당자	부서장	진양규	(02-2003-9100)
	한국거래소	책임자	부 장	송기명	(02-3774-8580)
	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02-3774-9130)

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①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합니다.
- ②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통합호가)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
- ③ **(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④ **(적용 예외)** 별도 지시·투자일임계약·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I.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 복수 거래시장 출범(25.3.)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KRX 또는 ATS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구축해야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여
 -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II.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1.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 투자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됩니다.
-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투자자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이 처리되며
 - * (최선집행 세부 기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증권사 기준
 - 따라서,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문 배분 기준입니다.

2. 주문 집행체계 구축

- **(통합호가)**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 *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
 -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투자자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효력만료 후에는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주문 집행
 -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 증권사는 유효기간 종료 때와 동일하게 최소 3회 이상 상기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

3. 최선집행 세부 기준

- **(적용 범위)**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 **(집행시장 선택)**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최선 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 (최선집행 일반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 수립하여야 합니다.

최선집행 일반 원칙

구분	[Taker 주문] 기존 물량 체결 주문	[Maker 주문] 신규 물량 조성 주문
매수	<p>총비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p> <p><small>*(주당 가격×매수수량) + 거래비용</small></p>	<p>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배분</p>
매도	<p>총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p> <p><small>*(주당 가격×매도수량) - 거래비용</small></p>	

- (시장 차별 금지)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
 -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 (최선집행기준 일반 예외)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최선집행기준 특별 예외)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재량의 한계)**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상이한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 상이한 기준을 수립한 사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하여야 하며
- 대량 주문 집행시에는 암묵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량주문은 지수 또는 개별 주식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

□ **(결과책임 미귀속)**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며

-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주문 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5. 그 외 증권사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사항

□ **(점검 및 공표)**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최선집행기준의 점검 결과는 10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함

-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대외 공표하여야 합니다.

□ **(교부 및 제공)** 증권사는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요구할 경우 관련규정상의 제공대상 정보를 투자자 요구시점부터 1개월 이내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선집행 관련 증권사의 의무

구분	의무 관련 기한	관련 법규
기준 점검·공표	3개월마다 점검, 부적합으로 변경시 공표	법§68③, 영§66의2③⑤
설명서 ¹⁾ 교부	주문을 받을 때 또는 미리 교부	법§68④, 영§66의2⑥
서면등 ²⁾ 증빙 제공	투자자가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68②, 영§66의2④ 등
기록·유지	기준 점검 결과는 10년 이상 기록·유지	영§66의2⑦ 등

1) (설명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

2) (서면등) 주문 집행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 시 제공하는 자료

Ⅲ.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 및 Q&A는 증권업계와 투자자 모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24.6.20.부터 등재될 예정이며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 Smart Order Routing :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 별첨1.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별첨2.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관련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